

I. 반론보도청구사례

인터뷰의 일부만을 방영하여 시청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등 발언 취지를 왜곡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반론보도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9.자 판결 (2003카합2180)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2003년 10월 9일 법무부 보호국장 정○○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방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보호감호소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을 보도한 후 연이어 시청자들이 보호감호소의 운영 실태가 신청인의 발언과 대조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송을 하여 신청인의 발언이 모순된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방송내용이 신청인의 원래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였다고 보여지고, 재소자들의 처우면에 있어서 교도소와 감호소의 차이를 비교, 설명함에 있어 신청인이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주식(主食) 비율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만 방송하여 신청인이 주식비율을 우선적으로 들어 피보호감호자와 교도소 수감자 사이에 주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강변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위 발언 내용에 대해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청인의 발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실제로 편집 또는 배치된 상태로 인하여 시청자들이 다소 비판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청인의 주장도 대체적으로 이 사건 방송에서 거론된 현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고, 방송 진행 내용에 의하더라도 갱생보호제도의 유용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발언 취지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신청인 주장을 일부만 인용하였다.

문화방송은 2003년 6월 17일 23:05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소리없는 사형선고, 청송감호소’라는 제목으로 현 보호감호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서 피신청인은 사회보호법 폐지와 위헌론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보호감호제의 목적, 보호감호제도의 범죄억지효과 등에 대해 신청인과 인터뷰를 해 그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신청인은 보도내용이 원래의 발언취지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3년 7월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3서울중재242)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카합2180 반론보도청구심판

신 청 인 : 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서울분사무소

담당변호사 차 형 근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금 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정 희

변론종결 : 2003. 9. 25.

판결선고 : 2003. 10. 9.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내용을 방송하라.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별

지 반론보도요구문 기재 방송내용을 방송하라. 만약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1, 2호증, 소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03. 6. 17.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리없는 사형선고, 청송감호소"라는 제목으로 보호감호제도에 관하여 방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그 방송 내용에는 법무부 보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8차례에 걸쳐 2분 10초 가량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방송은 기본적으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론에 입각하여 현 보호감호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취재, 방송한 것이었는데, 그 취재 과정에서 당시 담당피디였던 신청외 조○○는 신청인에게 사회보호법 폐지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보호감호처분이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위헌론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보호감호제도의 목적이 격리에 있는지 피보호감호자의 교화에 있는지 여부, 보호감호제도의 범죄역제 효과 및 재범을 추이, 피보호감호자의 질병치료 원칙이 국비인지 사비인지 여부, 2001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보호감호집행이 정지된 후 4년 5개월 동안 사회복지에 성공하였으나 질병 완치를 이유로 재수감된 이모씨 사례에 대한 입장, 법무부가 발표한 '보호감호 혁신방안'의 현실성 여부 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 위 조○○와 사이에 약 1시간 25분 가량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방송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진행자가 오프닝 멘트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상습범들의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보호감호제도가 실상은 사회적응능력을 제거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언급한 후, 보호감호소 가출소자들에 대한 동행취재를 통하여, 출소후,

②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어버린 사례, ③ 오랫동안 격리되었던 보호감호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재소자들의 막막한 소감, ④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갈 곳이 없고, 그로 인해 결국 재범에 이르게 된 사례 등을 소개하고,

⑤ 고려대 법과대학 학장인 배○○ 교수의 인터뷰를 통하여 피보호감호자들이 장기간 격리로 인하여 출소 후에도 사회적응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이어 ⑥ 청송감호소의 수감자 1,600명 중 절반 이상이 재수감되는 등 보호감호제가 실패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언급을 하고,

⑦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재소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⑧ 감호소가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나, 작업 내용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근로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고, 직업교육이 형식적이어서 사회복귀가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한편,

⑨ 그곳 교도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보호감호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한

⑩ 귀휴나 외박, 사회견학을 실제 실시하는 횟수가 미미하여,

⑪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고 출소 후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 결국 보호감호제도로 인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마저 허물어뜨린다고 일단락지은 다음,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⑫항을 보도하고, 연이어

⑬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집도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감호소에서 벌여 나오는 몇십만 원의 돈으로 과연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담당피디인 조○○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⑭항을 보도하며,

⑮ 그 후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를 방문취재하여, 갱생보호공단의 운영 실태, 시설현황, 감호소 가출소자들의 입소 사례 등을 살펴보고서,

⑯ 위 갱생보호공단에 쉽사리 입소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감호소 가출소자들이 결국에는 노숙자가 되고 말거나 재범에 이르게 된다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내고 있고,

⑰ 대한변협 법제이사인 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회보호법이 오히려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한데 이어, 법무부는 감호소 출신 재범에 대한 책임을 법무부에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취지로 진행자가 발언한 직후에,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⑱항을 보도하고,

⑲ 사회보호법의 제정 배경, 청송감호소 설치 목적, 사회보호법의 부당성 및 인권침해적 요소 등을 지강현 일당의 탈주극 사례를 덧붙여 설명하거나 지적하고,

⑳ 현재 보호감호소의 수용환경, 식사의 질, 의료지원 부족 문제 등을 살펴본 후, 그중, 의료지원 부족 문제에 관하여,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㉑항을 보도하고,

㉒ 여성 재소자의 경우의 문제점, ㉓격리 중심의 감호소 운영의 단면인 징벌방을 알아본

다음,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㉔항을 보도하고 있으며, 그 바로 직후,

㉕ 청송감호소가 격리로만 일관하고 있음에도 재소자들 대부분은 학력이 낮은 절도범 등 잡범이 대부분이고, 흉악범은 20%도 되지 않는 실태를 보도하기에 이르고,

㉖ 독일의 경우 보안감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으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아니라 위험성을 취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이와 대비하여

㉗ 우리의 경우에는 재범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보호감호가 잡범들에게만 엄격한 제도가 되고 교화보다는 분노를 키워 결국 재범을 저지를 경우 범행 수법이 더욱 흉폭해진다고 내용을 보도하고,

㉘ 진행자로부터 법무부의 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바탕으로 보호감호제는 개선이 아닌 폐지되어야 할 위험적 제도라고 주장된 뒤, 이어 이중처벌이라는 견지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론에 입각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㉙ 교도소와 감호소의 처우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옷의 색깔, 작업의 강제성 여부, 방의 면적, 식사의 질에서 차이가 난다고 간략하게 언급한 후,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㉚항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㉛ 그 후 행형법이 같이 적용되므로,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실제 처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짓고,

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여론이 비등하자 법무부는 대도시 인근 지역에 보호감호보호시설을 새로 짓고 처우를 개선하며 감호 기간의 상한선을 단축한다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진행자가 법무부의 개선안을 간략히 소개한 뒤, 그 개선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㉝기재 항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㉞ 1989. 3. 15. 방송된 뉴스데스크의 기사로서 법무부의 대도시 인근 보호감호소 설치계획에 관한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것이 여론무마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㉟ 지금까지 보호감호제가 형벌과 같이 시행되어 왔다고 한 뒤, 위에서 본 이모씨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다음,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㊱항을 마지막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그밖에 보호감호처분의 판결시점, 가출소의 결정 기준, 이에 대한 불합리와 모순점 등을 제기한다.

2. 주장 및 판단

신청인은, 별지 인터뷰 내용은 신청인의 원래 인터뷰 취지와는 달리 왜곡되어 방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반론보도요구문에 따른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가.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⑫항, ⑭항 부분

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발언의 원래 취지는 현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상 보호감호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는 근로보상금이 적고, 교도소 재소자들에 비하여 가족이나 사회에 절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전제로 하여, 출소자 개개인의 갱생의지 및 사회배려도 중요하고, 또한 갱생보호제도 등 출소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여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각각 강조한 것인데, 이 사건 방송에서의 편집과 배치 상태에 따른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갱생의지가 있어도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유도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이 갱생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었으며, 또한 신청인의 위 발언에 이어 갱생보호제도가 실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갱생보호제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신청인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거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감호제도로 인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마저 허물어뜨린다는 진행자의 언급이 있는 연후에,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⑫항을 보도하고,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내용 기재 ⑭항을 보도한 다음 곧바로 갱생보호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 보도해 나가는 순으로 이 사건 방송을 편성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의 위 각 발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실제로 편집 또는 배치된 상태로 인하여 시청자들이 위 각 발언을 다소 비판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의 위 주장 자체로도 위 각 발언의 취지는 대체적으로 이 사건 방송에서 거론된 현 보호감호제도상의 문제점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현실 상황하에서는 출소자의 개개인의 갱생의지 및 사회배려도 중요하다는 데에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방송 진행 내용에 의하더라도 갱생보호제도의 유용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 각 발언의 취지 자체가 크게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⑱항 부분

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발언의 취지는 피보호감호자의 재범 문제에 대하여, 법무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감호자 본인의 갱생의지 및 사회배려의 측면에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였는데,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제작, 편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전후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보호감호자의 재범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 피보호감호자 개인의 갱생의지나 사회배려의 문제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송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에다가 위 발언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 발언 자체로도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이나 사회복지 문제에 관하여 신청인이나 법무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감호자 본인의 갱생의지 및 사회복지배려의 문제도 강조하고자 한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보호감호자 개인의 갱생의지나 사회복지배려의 문제에만 전적으로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㉔항 부분

신청인은, 의료지원 부족 문제가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발언을 언급하기 이전에, 의료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분배상의 어려움이 있고, 일반 시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더 나은 의료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 발언 내용만을 방송함으로써, 신청인이나 법무부가 의료지원의 부족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있거나 이에 무관심하다는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위 주장과 병행하여, 신청인은 의료지원 부족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개선 노력에 관한 언급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하여 방송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별지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기로 한다).

그러나 소을 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의 위 발언은 현재 감호소 재소자들의 의료환경과 관련하여 위 재소자들이 질병에 걸릴 경우 그 치료가 어렵다는 문제점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의료인력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발언 내용만을 방송함으로써 위 발언의 주된 취지를 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나 법무부가 의료지원 부족 문제를 소홀히 여긴다거나 이에 무관심하다는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㉕항 부분

소를 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발언 직후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동안 사회보호쪽에 격리 쪽에 좀더 치중을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보호감호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위 발언에 나타난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 온 것이 아니고, 격리 쪽에 치중되어 왔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㉔항 부분만을 보도하고, 연이어 곧바로 보호감호소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보호감호소가 격리로 일관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 제조자들 대부분은 흉악범이 아닌 잡범이라는 내용을 방송 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방송 내용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은 보호감호소의 실제 운영 실태가 신청인의 위 발언과 대조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신청인의 위 발언 내용이 실제로는 모순된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넉넉히 보여지므로, 결국 신청인의 위 발언 취지를 왜곡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은 방송된 위 발언 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마.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㉕항 부분

소를 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인터뷰 당시에 신청인은 제조자들에 대한 처우면에 있어서 교도소와 감호소의 차이를 비교, 설명함에 있어 위 발언 내용과 같이 주식비율면에서의 차이를 간단히 언급한 이후에,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수용밀도, 접견횟수, 서신 발신, 전화 사용, 직업훈련과 학과교육의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차이가 있음을 직접 지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발언 내용만을 방영함으로써 신청인이 주식 비율을 우선적으로 들어 피보호감호자와 교도소 수감자 사이에 주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강변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위 발언 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식 비율 이외에 수용밀도, 접견 횟수, 서신 발신, 전화 사용, 직업훈련과 학과교육의 측면에서의 각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관련자료를 응시하면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방송의 속성상 그 부분을 편집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반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바.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㉖항 부분

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게 된 것은 병 치료를 위하여 감호집행정지로 출감

하였던 이모씨가 병 치료 후, 신문관촉 일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자료에 의하면, 위 이모씨가 감호집행 6개월 만에 감호집행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감호집행 기간이 당시 많이 남아 있었고, 질병 또한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으므로, 형평의 원리상 재집행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피신청인이 이모씨가 신문사 지국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자료화면을 내 보낸 뒤, 감호집행기간 등 재집행 결정 당시 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위 인터뷰 내용만을 방영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이 위와 같은 이모씨의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신청인 및 신청인이 소속한 법무부가 법 집행의 형평성만을 내세워 합리적 근거 없이 재집행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일반론적인 변명을 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갑 2호증(질문안), 소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당시 담당피디인 조○○로부터 위 이모씨가 병 치료를 위해 나온 4년 5개월 동안 사회복귀가 현격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장되었음에도, 여전히 재범의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법 집행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던 사정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이상, 위 이모씨의 경우에 사회복귀가 현격히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발언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기타

신청인은, 신청원인에서 별지 인터뷰 내용 기재 ㉔항 부분에 대하여도 반론을 구하는 듯 보이나, 신청취지에 나타난 별지 반론보도요구문 기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에 대한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발언에 대한 반론권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별지 인터뷰 내용, 그 보도 경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반론보도문의 방송내용 및 방송방법은 별지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 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 신청을 인

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현
판사 정 재 우
판사 송 찬 호

반론보도문

(1) 방송방법 : 중앙상단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기사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기사 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 줄 간격, 글자 간격의 사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방송내용 : 문화방송은 2003. 6. 17.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소리없는 사형선고, 청송 감호소"라는 제목으로 보호감호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취재, 보도하면서, 보호감호 제도의 목적이 격리인지 재소자의 사회복귀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흉악 범죄가 많을 때에는 격리 쪽에 중점을 두게 된다는 취지의 법무부 보호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다음, 곧바로 격리로 일관되고 있음에도 그 재소자들 대부분은 흉악범이 아닌 잡범이라는 보호감호소 실태를 방송하고, 재소자 처우 면에서 교도소와 감호소의 차이에 관하여, 단순히 주식 비율만을 예로 든 법무부 보호국장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바 있으나, 법무부 보호국장이 원래 인터뷰 취지가 왜곡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에 있어 그동안 사회보호 쪽에, 그리고 격리 쪽에 좀더 치중했던 것은 사실이고, 신청인과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반성적 검토를 하고 있다. 신청인은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 면에서 교도소와 감호소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주식 비율 이외에도 수용밀도, 접견 횟수, 서신 발견, 전화 사용, 직업훈련과 학과교육 등 더 중요한 차이가 많음을 직접 지적하였다.

반론보도 요구문

- 제 목 : 보호감호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 내 용 : 2003. 6. 17. MBC PD수첩 “소리없는 사형선고, 청송감호소” 라는 제목으로 (주) 문화방송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와 관련하여 보호감호제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다름 없어 인권침해등 문제가 많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 1)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 2) 위헌론에 대한 입장
- 3) 보호감호제의 목적
- 4) 보호감호제도의 범죄억지효과
- 5) 외국의 실상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는 바,
인터뷰 부분중

① 근로보상금 언급부분은 교도소와 감호소에서의 근로보상금의 차이를 설명한 후,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감호소에서 교도소 보다 더 많은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언급한 후, 근로보상금의 다과를 떠나서 피보호감호자 본인의 갱생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출소시 소지한 근로보상금이 많아야만 사회복귀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그 일례로 최근 청송군 내에서 발생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고,

② 갱생보호 관련부분은 본인의 갱생의지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갱생보호제도 등 출소자를 지원하는등 제도와 단체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지원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③ 사회배려를 언급한 부분은 보호감호를 받고 출소한 사람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갱생보호의지와 함께 사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피보호감호자가 스스로가 자기갱생 의지를 갖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회에서 이를 감싸 안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④ 의료지원 부분은 의료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산분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 비하여 범죄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더 나은 의료지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언급한 후, 기본적으로 의료지원부족 문제는 의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취지이며

⑤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격리가 강조된다는 부분은 형사정책의 일반적 입장을 표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감호소가 사회복귀보다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신청인이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격리에 중점을 둔다는 말을 인용하여 감호소에 갇힌 사람들은 흉악범이 대부분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흉악범보다는 잡범들이 주류

여서 신청인의 말은 모순이 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유도한 부분이고,

⑥ 급식의 쌀, 보리 비율을 언급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감호자들이 교도소 제조자들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근로작업의 강제성 여부·수용밀도·접견·면회·서신·귀휴·전화사용·근로보상금·직업교육등 여러면에서 피보호감호자들이 교도소 제조자와 유사하거나 일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사소한 부분으로 식사의 질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부분이고 (PD의 요청에 의하여 수용밀도, 근로의 강제성 여부등으로 부터 시작하여 양자를 도표식으로 세세하게 비교하여 설명함),

⑦ 40세 이모씨의 집행정지후 재수감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PD가 감호집행 정지를 받아 출소하였다가 이후 치료가 완치되어 다시금 감호집행을 받고 있는 이모씨의 사례에 대하여 그 당부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보호국장이 당시 자료를 들어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질병을 사유로 한 집행정지의 경우는 이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형벌의 경우에도 치료완료후 재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뿐만 아니라 당시 이모씨의 경우, 감호집행 6개월만에 감호집행정지된 것이어서 이후 완치시 재집행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감호 집행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참작되었다고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

⑫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최악의 경우에, 4백만원인가 5백만원인가를 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보다방에서 일주일 죽치면서 아가씨들 하고 술마시고 놀면서 다 탕진하고 결국 재범한 사람이 있어요. 4백만원이면 뭐하고, 5백만원이면 뭐해요. 결국은 본인의 의지지. 단돈 한푼 없어도 결국은 내가 이제 범죄 세계와 손을 끊겠다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⑬ “갱생보호와 연결하면, 본인이 그 의지가 있으면 다 방법은 있어요”

⑭ “보호감호 받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해 줍니까? 본인이 또 그럼 재기 갱생의욕이 아주 남들보다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감호소나 교도소의 처우에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고 갈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⑮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 모두 문제가 의뢰지원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의사가 없어서 그래요”

⑯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려 가지고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될 때는 격리 쪽

에 중점이 가질 거고, 그게 아니고 사회가 평온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촉진되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그럴 땐 사회복귀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겠죠”

㉔ “교도소에는 쌀이 80%, 보리가 20%, 보호감호소에는 쌀이 90%, 보리가 10%, 뭐 지적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㉕ “지금 현재 청송감호소에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처우가 현저히 나쁘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말하자면 작업의 숙련도나 외부와의 빈번한 교류가 부족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옮기고, 옮긴 상태에서 보다 좀 더 개방적인 처우를 해보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㉖ “법 집행의 형평성이란 문제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런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 우리 형벌도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형벌도 결국은 사회복귀, 재사회화라는 얘기인데, 형 집행정지 했다가 다 낮고 나면 다시 집행하지 않습니까” □

판검사에게도 대가를 지급하고 사건을 일선받아 사법적 정의를 유린했다는 내용은 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지엽말단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9.자 판결 (2003카합2209)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2003년 10월 9일 ‘대전법조 비리사건’ 관련 이○○ 변호사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의미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비록 신청인이 판검사에게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다고 한 바 없어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체 문맥에서는 신청인이 판검사에게 사건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법원과 검찰 직원들,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보도로 뇌물 공여의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진다고 해도 이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판검사는 개별사건에 관하여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사법절차의 주체자로서, 판검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아 사법적 정의를 유린하였다는 것과는 일반인의 주된 관심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볼 때 결코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화방송이 2003년 6월 20일자 21:00 「뉴스테스크」프로그램에서, ‘대전범조비리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판검사들에게도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신청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3년 7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3서울중재248)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카합2209 반론보도심판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공 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 형 태, 이 정 희

변론종결 : 2003. 9. 25.

판결선고 : 2003. 10. 9.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방영되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21:00 뉴스프로그램 ‘뉴스테스크’ 시간 말미에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내용을 청색 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1회 방영하며,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자에게 낭독하게 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 중 20%는 신청인이, 그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반론보도요구문 기재 내용을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방영되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21:00 뉴스프로그램 '뉴스데스크' 시간 첫머리에 청색 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방영하며,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자에게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텔레비전 방송 등의 업무를 행하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방송사업자로서, 2003. 6. 20. 21:00경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대전법조비리 판결① 특종기자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주장 및 판단

(1) 신청인은, 자신은 판, 검사에게 사건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사법처리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판, 검사에게 사건알선과 관련하여 소개비를 지급하여 사법처리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가 피신청인의 이전 보도를 사실대로 축약하여 보도한 것으로, 신청인이 판, 검사에게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다고 한 바 없어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도내용의 의미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보도내용에 대하여 보건대, 뉴스진행자가 신청인이 일부 판검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대전법조비리사건이라고 하여 사건의 성격을 판, 검사를 전면에 내세워 규정하였고, 신청인이 검찰과 법원의 일부 전현직 간부, 경찰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받았다고 보도했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일부 판, 검사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일부 판, 검사에 대한 위 의혹은 일부 판, 검사가 돈을 받고 신청인에게 사건을 알선한 의혹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어 검찰의 수사에 의해 일부 판, 검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고, 그 결과 일부 판, 검사가 사표를 내었고 검찰직원이 구속되었

다고 하여 판, 검사도 검찰직원과 같이 사건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 지급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으며, 이어 당시 검찰총장의 사죄 인터뷰 바로뒤에 신청인이 뇌물 공여 사실 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위 일련의 전체 문맥에서는 신청인이 판, 검사에게 사건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도내용의 전체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신청인이 판, 검사에게 사건 알선과 관련하여 소개비를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신청인은 나아가, 신청인이 법원과 검찰 직원들 및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보도로 뇌물공여의 대상이 판, 검사로 넓혀진다고 하여도 이미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채권자와 관련된 점에 있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는 미미한 지엽 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반론보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 검사는 개별사건에 관하여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법절차의 주재자로서 일반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은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과 판, 검사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받아 사법적 정의를 유린하였다는 것과는 일반인의 주된 관심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신청인과 관련된 점에 있어서도 지엽 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영 방법

가. 내용

신청인은 별지 반론보도요구문 기재 내용으로 방영을 구하나, 같은 별지 기재 내용중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 추가적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신청인의 보도내용과 이로 인해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그리고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사실의 진술을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 반론보도요구문 기재 내용을 적절히 삭제 수정하여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내용으로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

나. 방영 방법

위 반론보도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방영되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21:00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 시간 말미에 청색 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1회 방영하며,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자에게 낭독하게 하는 것이 원보도문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3. 간접강제

한편,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문 방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현
판사 정 재 우
판사 송 찬 호

반론보도문

MBC는 지난 6월 20일 오후 9:00 뉴스데스크에서 '대전법조비리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데스크는 지난 99년 대전의 이○○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의 일부 전현직 간부, 경찰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뇌물 공여 사실 등이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하여 이○○ 변호사는 "자신은 판·검사에게 사건소개와 관련하여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법처리된 사실이 없다"라고 반론하였습니다. 끝.

방송내용

앵커 : 뉴스데스크는 지난 99년에 대전의 이○○ 변호사가 일부 판검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대전 범조비리 사건을 특종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이○○ 변호사는 대전문화방송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기자 : 뉴스데스크는 지난 99년 대전의 이○○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의 일부 전현직 간부, 경찰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한 동안 모든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5명의 판사와 23명의 검사가 수백만원의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판사 2명과 검사 6명이 사표를 냈고 전현직 검찰직원 4명이 구속됐습니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 대국민 사회성명과 함께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 국민 여러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 : 이○○ 변호사는 뇌물 공여 사실 등이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뉴스데스크 기사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대전 문화방송 기자 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손철우 판사는 사건이 보도된 지 3년 반이 지난 오늘 당시 대전 범조비리를 취재했던 고○○ 전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서○○ 기자 등 취재기자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함께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입니다. 끝.

반론보도 요구문

MBC는 2003. 6. 20. 21:00 방영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대전범조비리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대전MBC 소속 기자들에 대하여 그날 오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유죄판결을 비방하는 방송을 하면서 “지난 99년에 대전의 이○○ 변호사가 일부 판검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대전 범조비리 사건을 특종보도”하였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99년 대전의 이○○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의 일부 전현직 간부, 경찰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뇌물 공여 사실 등이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라고 보도하여 본인이 판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사법처리되었고 MBC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의혹만을 제기한 양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

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판사 검사들에게 뇌물이나 향응은 물론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본인이 판사검사들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하고 부당한 뒷거래를 하였다고 허위보도를 하였으므로 관련 기자들을 2000. 1. 사정당국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 20. 대전MBC 소속 강○○ 기자의 3명에 대하여 본인의 고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던 1명의 전직 기자는 법률상 집행유예 결정자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MBC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본인이 판검사들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로 사법처리되었고, MBC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의혹만을 제기한 양 또 다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판검사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로 사법처리된 사실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본인이 판검사들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양 또 다시 허위보도를 감행한 사실에 대하여 응당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MBC가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본인과 모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정도를 걷을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

피신청인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신청인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3. 10. 10.자 판결 (2003카기711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흥훈 부장판사)는 2003년 10월 10일 ○○구청장의 4인이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신청인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문이 2003년 7월 15일자 1면 『구청장·수행팀, 판공비 등 행정정보공개 촉구하던 본지 사장에게 집단 폭력행사』 제하의 기사에서, ○○구청에 구청장 판공비 등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회신을 촉구차 구청장 면담을 하러갔던 ○○신문 사장에게 구청장의 지시하에 구청장 비서진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3년 8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3서울중재282)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카기7114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1. 서울특별시 ○○구

대표자 구청장 ○ ○ ○

2. 권 ○ ○

3. 강 ○ ○

4. 옥 ○ ○

5. 황 ○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신문

대표이사 유 ○ ○

변론종결 : 2003. 9. 19.

판결선고 : 2003. 10. 10.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신문” 1면 좌측상단부분에 별지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의 형태로 제목은 고딕체 50급 활자 크기로, 본문 부분은 위 신문의 본문 활자 크기로, ‘반론보도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 외 4인' 부분은 고딕체 22급 활자 크기로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위 신문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들에게 매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각 신청인들에게 매주 각 금 30,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외에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2003. 7. 15.자 '○○신문'(제661호)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구청장·수행팀, 판공비 등 행정정보공개 촉구하던 본지 사장에게 집단 폭력행사'라는 제목하에 신청인 ○○○이 신청인 강○○ 등에게 유○○을 폭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신청인 ○○○ 등이 피신청인 대표이사인 유○○을 집단 폭행하였고, 신청인 강○○이 유○○에게 유○○이 신청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공개결정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통지를 했다고 거짓말했으며, 유○○은 이를 따지기 위해 구청장인 신청인 ○○○에게 면담요청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그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사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반론보도의 형식, 크기, 내용 등은 위 기사가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홍 훈
판사 이 영 훈
판사 김 연 학

반론보도문

- 제 목 : ○○○ 구청장, ○○신문 사장 폭행지시한 사실없다
- 본 문 : 「○○신문」 2003. 7. 15.자(제661호)는 제1면에서 ‘구청장수행팀, 관공비등 행정정보공개 촉구하던 본지 사장에게 집단 폭행행사’라는 제목하에 ○○○ ○○구청장의 폭행지시에 따라 ○○구청 총무과장 등이 ○○신문 유○○ 사장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유○○은 2003. 7. 11(금) 20:10경 ○○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심의 마지막 날 구의회에 출석한 ○○○ 구청장을 구민회관 3층 관장실로 찾아가 ○ 구청장에게 “이야기 좀 합시다”며 말을 건넸으나, 당시 2003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와 구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검토중에 있던 ○ 구청장은 “지금 바쁘니 다음에 합시다”하고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일어서자 유○○은 ○ 구청장에게 샷대질을 하면서 “당신 나하고 이야기 안할꺼야” 하면서 ○ 구청장에게 쫓아가려고 하자 총무과장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이 유○○을 막은 것일 뿐 유 사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 당시 ○○구청 총무과장이 유○○에게 “유○○ 사장, 나하고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면서 “행정정보공개 신청 건은 총무과장이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 나하고 얘기합시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 구청장이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테니 총무과장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은 그 결과를 내일 보고하세요”라고 달랬으나 유○○은 계속 고함을 지르고 샷대질을 하면서 구의회의 속개에 맞춰 추경예산안 답변차 6층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려는 ○ 구청장을 못가게 막고 소란을 피우므로 총무과장 등이 유○○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 ○○○ 구청장이 총무과장 및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에게 유○○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구 총무과장 등이 ○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유○○을 폭행했다거나 또는 유○○을 옆 사무실로 감금하려 하면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구는 유○○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공개를 구하는 사항과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처리부서도 4개과에 해당되어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결정기간 연장을 통지하였다.

반론보도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 외 4인

□

보도내용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외관이나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반론보도청구는 단순한 지엽말단적인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3. 12. 5.자 판결 (2003카기8206)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003년 12월 5일 대통령비서실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스스로 정정보도를 할 경우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게재한 기사는 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의 사유로 삼는 바와 내용이 다르고 기재도 불충분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청구가 부제소특약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으며, 신청인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제1부속실장의 전횡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취지의 원문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 면담 등의 업무는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는 등의 내용의 반론보도청구는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외관이나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개개의 시민들에 비하여 언론매체에 대하여 월등한 접근력과 영향력, 언론기관에 대한 규제력까지 가지고 있어 국가기관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국민 일반이 청구한 경우와 같이 반론보도청구의 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기사로 인한 올바른 여론형성 방해와 왜곡의 정도가 국가기관으로서도 용인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의 반론보도청구를 쉽게 인용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일부 청구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주간조선 2003년 8월 14일자 24~25면 『비서실장도 눈치보는 ‘문고리’ 권력』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과의 면담, 보고 등 일정관리

등을 통해 비서실장이 눈치 볼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부속실 직원도 늘어나 보안사고의 우려도 높으며, 양길승 항응 과문이 엉성하게 마무리된 것은 부속실장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라고 보도하자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업무를 감독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3년 9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3서울중재344)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카기8206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대통령비서실

대표자 비서실장 문 희 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 대 화, 김 택 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3. 11. 7.

판결선고 : 2003. 12. 5.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지 '주간조선'의 24쪽 이내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28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주간조선'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조선'을 발행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일 금 삼백만(3,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지 '주간조선'의 24쪽 이내에 2단 상자 기사로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48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명조체 12급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는 판결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

이 유 :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3. 6.경 발생한 청와대 제1부속실장 양길승의 향응 파문에 관하여 자사가 발행하는 주간지인 주간조선(이하 '이 사건 간행물'이라고 한다) 2003. 8. 14.자 24, 25쪽에서 "비서실장도 눈치 보는 '문고리 권력'"이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의 모든 전화·대통령 향한 보고 관리... 통수권자 일정 조정해 권한 행사도"라는 발문을 달고, 이어 별지 원문보도 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반론보도청구권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자가 아니므로 정기간행물의등목록등에 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에 의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정간법 제16조 제7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관청도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정부조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인 신청인은 그 업무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부제소특약

피신청인은 또한 이 사건 기사 보도 직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권○○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신청인 이○○ 기자에게 피신청인 스스로 정정보도를 할 경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부제소특약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봐도 위 권○○이 신청인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위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는 점(정간법 제16조 제5항), 피신청인이 2003. 8. 28.자 이 사건 간행물 96쪽의 독자마당란에 게재한 '바로잡습니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사유로 삼는 바와 그 내용이 다르고 기재도 불충분한 점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 사정에 의하면, 설령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의 내용이 피신청인의 정정보도의 내용, 분량 등에 상관 없이 어떤 경우라도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위 부제소특약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반론보도청구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반론보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신청인은, '신청인 소속인 제1부속실장의 업무를 제대로 감독, 파악하지 못하여 소위 양길승 항응 파문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별적 연관성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우선 청와대 제1부속실은 신청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 중 제1부속실에 관한 대부분의 기사는 현 정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 관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제1부속실이 대통령비서실 직제에는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제1부속실은 대통령비서실의 내부 부서로서, 제1부속실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된 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비서관으로 보하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 과거 정부의 제1부속실장을 예로 든 것은 이 사건 기사 게재 무렵 항응 파문을 일으킨 제1부속실장 양길승의 권한, 업무 등과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 게재 의도, 목적은 양길승에 관한 보도일 뿐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은 이 사건 기사

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제1부속실장의 전횡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취지의 원문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 면담 등의 업무는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는 등의 내용의 반론보도청구는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외관이나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 중에서 아래에서 일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청 자체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론보도문의 내용, 형식 등

(가) 반론보도문의 내용

그러나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 내용 중 「주간조선이 양길승 향응 파문이 영성하게 마무리된 원인이 부속실장의 위와 같은 막강한 파워 때문이라고 전한 것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은 공정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적정한 징계절차를 밟았으며, 이는 민주적 공직사회에서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 ‘제1반론문’이라 한다.) 「‘열린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스템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확고하며, 부속실 역시 대통령비서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역할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제2반론문’이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정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은 단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고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언론보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체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1반론보도문 중 ‘주간조선이... 파워 때문’이라는 부분은 양길승 제1부속실장이 향응을 받은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사후처리과정에 대한 견해 표명 등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정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원문보도에 비추어 보면 제1반론문 중 「대통령비서실…」 이하 후단 부분 및 제2반론문은 그 내용이 사실적 진술로서의 반박이라기 보다는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주관적 반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언론보도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인 개인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비록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더라도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피해자인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법이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인데, 일정한 기본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기관이 아닌 이상 국가기관은 어디까지나 기본권의 향유주체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질 뿐인 점, 국가기관은 개개의 시민들에 비하여 언론매체에 대하여 월등한 접근력과 영향력, 때로는 언론기관에 대한 규제력까지 가지고 있어 이러한 국가기관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국민 일반이 청구한 경우와 같이 반론보도청구의 범위를 해석하였다가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까지 감안하면,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일부 사실과는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관 스스로는 다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로 인한 올바른 여론형성방해와 왜곡의 정도가 국가기관으로서도 도저히 그대로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반론보도청구를 쉽게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제1, 2반론보도문 부분에 관한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반론보도문의 범위

결국,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길이 및 이로 인하여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이 사건 기사에서 방영된 신청인의 반론의 대상 등 기록상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며, 이와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홍 훈
판사 이 영 훈
판사 김 연 학

〈별지 1〉 반론보도문

주간조선 1766호(2003. 8. 14.자) 24, 25쪽은 “비서실장도 눈치 보는 ‘문고리권력’”이라는 기사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과의 면담, 보고 등 일정관리 등을 통해 비서실장이 눈치 볼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부속실 직원도 늘어나 보안사고의 우려도 높으며, 양길승 향응 파문이 영성하게 마무리된 것은 부속실장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우선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사적인 일정을 제외한 장관이나 수석보좌관의 면담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의전비서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부속실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보고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보고서 역시 청와대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접 보고되기 때문에 부속실에 의한 우선순위가 조정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또한 부속실 인원이 급증했다거나 과거 부속실 행정관들이 관저에서 근무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제1부속실의 인원은 김영삼 정부 당시 비서관 1명, 행정관 2명, 행정요원 3명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비서관 1명, 행정관 4명, 행정요원 1명이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비서관 1명, 행정관 3명, 행정요원 2명으로 과거정부와 다름이 없고, 과거에도 행정관들은 지금처럼 본관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부속실 인원이 늘어나 보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부속실 직원에 의한 보안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론보도청구인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문 희 상

〈별지 2〉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주간조선 2003년 8월 14일자 24면, 25면 “비서실장도 눈치 보는 ‘문고리 권력’”이라는 기사와 관련 대통령 비서실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주간조선은 청와대 제1부속실이 대통령과의 면담, 보고 등 일정관리 등을 통해 비서실장이 눈치 볼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부속실 직원도 늘어나 보안사고의 우려도 높으며, 양길승 향응 파문이 영성하게 마무리된 것은 부속실장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사적인 일정을 제외한 장관이나 수석보좌관의 면담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의전비서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부속실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보고시간이 달라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의 면담이나 보고를 요하는 비서관 및 행정관 등은 언제든지 의전비서관실을 경유해 대통령과 만날 수 있으며, 부속실에서 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기능이 있다면 대통령 지시사항을 의전비서관실에 전달하는 정도이다. 보고서 역시 청와대 CUG를 통해 직접 보고 되기 때문에 부속실에 의해 우선순위가 조정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주간조선이 양길승 향응 파문이 영성하게 마무리된 원인이 부속실장의 위와 같은 막강한 파워 때문이라고 전한 것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은 공정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적정한 징계절차를 밟았으며, 이는 민주적 공직사회에서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속실 직원이 급증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른 것이다. 제1부속실의 인원은 김영삼 정부 당시 비서관 1명, 행정관 2명, 행정요원 3명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비서관 1명, 행정관 4명, 행정요원 1명이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비서관 1명, 행정관 3명, 행정요원 2명으로 과거 정부와 같다. 따라서 부속실 인원이 늘어나 보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전제사실을 잘못 파악한데서 비롯된 것이었고,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부속실 직원에 의한 보안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 주간조선은 또 보안사고가 우려돼 과거 부속실 행정관들은 관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도 지금처럼 본관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점이 청와대 보안 사고의 진원지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것도 그 전제사실을 잘못 파악한데 기인한 것이다. ‘열린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스템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확고하며, 부속실 역시 대통령 비서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역할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대통령 비서실장 문희상

원문보도

향응과문 '청와대 제1부속실장'

비서실장도 눈치보는 '문고리 권력'

대통령의 모든 전화·대통령 향한 모든 보고 관리…통수권자 일정 조정해 권한 행사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청와대의 2인자인 비서실장조차 잘 보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쓸 정도의 실세입니다.”

양길승(梁吉承)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직에 대해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K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력은 통치권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며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장관과 수석들의 면담과 보고를 주선하면서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가 양길승 실장이 아니었다면 사건 마무리가 엉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관련자가 다른 일반 비서관이었다면 과연 민정수석실이 지난 7월 10일 구두 경고만 하고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도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었겠느냐는 것이다.

제1부속실장이 갖는 힘은 K씨의 지적대로 ‘핫라인(hot-line·비상전화)’을 제외한 대통령의 모든 전화와 수석과 장관들의 보고를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보고를 연결해주는 데서 나온다. 문제는 전화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연결시켜주는 업무가 권력으로 직결되는 까닭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업무 과다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장관과 수석들은 저마다 그 부족한 시간 내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갖거나 보고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제1부속실장인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제1부속실장과의 친소(親疎) 정도에 따라 대통령의 면담 시간이 빨라지거나 밀리거나 한다”고 전했다.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한 인사는 “대통령이 수많은 보고서 중 먼저 보는 것은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의 눈에 띄도록 견출지(見出지)를 붙인 것이다”라며 “장관과 수석들이 제1부속실장과 친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YS 때 장학로씨 낙마

제1부속실장이 갖는 힘의 또 다른 원천은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 K씨의 전언이다. 그는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왔다가 차례를 기다리는 장

관·수석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주파수를 맞출 기회가 많다”며 “정보를 얻으려는 청와대 안팎의 사람들이 제1부속실장을 접촉하려 애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관과 수석들이 대통령과의 면담 시간을 빨리 잡거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보고서를 먼저 접하도록 하기 위해 제1부속실장에게 각 부처와 수석실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설명하게 마련이다. 그 결과 제1부속실장은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1부속실장에게서 노리는 것도 이 같은 정보라는 얘기다.

제1부속실장이 수뢰 혐의 등으로 ‘낙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그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잘 보여서 최고 통치권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싶은 고위 관료와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때 장학로(張學魯)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축재 비리 사건과 김대중 정부 때 이재만(李在萬)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대통령 일정 유출 논란에 이어 최근 양길승 실장의 향응 사건 등 제1부속실장 관련 비위 사실이 꼬리를 무는 것은 ‘문고리 권력’을 이용하려는 세태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역대 정권마다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 제1부속실장에게 ‘은시’를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과 수석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배우고자 마음먹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1부속실만큼 확실한 곳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통일 군사 정보 등 각 부문의 행정부처와 기관등에서 매일 대통령에게 올리는 주요 보고가 모두 제1부속실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곳에서 일할 경우 한눈에 국정운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통령 측근 A씨가 원한 자리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노 대통령의 ‘386’ 측근 중의 하나인 A씨가 제1부속실장을 희망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모 사건에 연루되 청와대 입성이 좌절됐는데 그 결과 양길승씨가 제1부속실장을 맡게 됐다. 전남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96년 모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들어온 양 실장은 2000년 말 서갑원 의전비서관의 소개로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작년 초 민주당 후보 경선 때 광주에서 교수와 변호사 등 ‘500인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 노 후보가 광주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노풍(盧風)’을 점화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제1부속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바로 연결돼있다.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방에 들어가기 전 거치는 보좌진이 일하는 공간과 같은 곳이 제1부속실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 제1부속실의 시스템이 달라졌다.

원래 제1부속실 인원은 부속실장과 전화 받는 여비서 두 명 등 3명뿐이었다. 부속실 인원을 이처럼 제한했었던 것은 장관과 수석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인 만큼 부속실 인원이 많을 경우 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제1부속실에는 부속실장과 전화 받는 여비서 두 명만 있게 하고 3~4명의 행정관들과 이발사, 코디는 관저(官邸)에서 일하게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부속실장과 4명의 행정관들이 모두 제1부속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부속실의 이 같은 변화를 최근 청와대 보안 사고의 진원지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제1부속실장 출신의 또 다른 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1부속실의 한 행정관의 코멘트가 보도된 데 대해 “부속실 직원의 통화 내용이 보도되는 것 자체가 보안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부속실 인원 급증... 보안 우려

노무현 정부 들어 제1부속실이 예전만큼 위세를 갖지 못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 까닭은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노 대통령의 386 최측근 중 하나인 이광재(李光宰) 국정상황실장의 집무실도 대통령 집무실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예전엔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대통령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노 대통령의 국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진 이광재 실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제1부속실장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술집과 호텔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허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다.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재봉(盧在봉) 전 총리는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의 부속실장은 비서실장의 통제하에 주어질 일에만 열중했지 밖으로 나가 정치와 관련된 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직을 9년여 역임한 김○○(金○○) 씨는 “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왜 제1부속실 같은 기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제1부속실의 존재 자체에 회의를 표시했다. 그는 “박 대통령 때는 제1부속실 같은 곳은 없었고 대통령이 물이나 차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은 2명의 부관(副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이들 부관은 오로지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 곁에서 번갈아 숙직하면서 대통령이 초인종을 눌러 물이나 차를 가져 오라면 이를 이행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의 일정이나 회의, 면담 등의 주선과 준비는 의전수석실에서 맡았었는데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양길승 실장 항응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가 핵심부터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양 실장이 항응을 제공 받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SBS방송에 제보함으로써 기획폭로 공방과 관계 없이 그가 조세포탈과 윤락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술집과 호텔에서 항응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가 지난 5월 제정한 ‘3만원 이상의 금전·선물·항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윤리규정을 위반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반론기회를 주었으나 시청자들이 이를 단순한 변명 정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면 반론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2. 13.자 판결 (2003카합83)

사실개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남근 부장판사)는 2004년 2월 13일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등이 진주문화방송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신청인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방송내용 중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원문을 왜곡 해석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방송은 신청인 조합의 노조탄압을 위한 불법적인 정상화운영위원회의 운용, 신청인 정○○의 비리 의혹 등에 그 보도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방송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측의 반론을 보장했다고 들고있는 부분의 경우에도 이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은 이를 신청인들의 반론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신청인들의 단순한 변명 정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진주문화방송이 2003. 7. 22. 18:40 및 21:40에 ‘농협이 구사대 운영’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신청인 조합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정상화운영위원회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서부농협조합장 비리 의혹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진주농민회 서부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인 조합의 조합장인 신청인 정한섭이 H컴퓨터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부농협에 컴퓨터 등을 독점 공급해 왔고, 불법계직을 통하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을, ‘서부농협노조 조합장 퇴진 요구’ 제하의 보도에서 신청인 조합의 노동조합이 조합장 퇴진투쟁에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이 H컴퓨터회사 뿐 아니라 소금융통업체까지 운영해 왔으며 또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이 불법단체라면서 법원에 노조활동금지 가처분을 내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는 내용을 방영하자, 신청인등은 방송보도에 의해 인격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3년 8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3경남중재13)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카합83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1.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정 ○ ○

2. 정 ○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김 영 수

피신청인 : 진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진주시 평안동 47

대표자 사장 윤재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석 곤

변론종결 : 2004. 1. 28.

판결선고 : 2004. 2. 1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도래하는 화요일 18:40경과

같은 날 21:40경의 같은 지역뉴스 방송시간에, 텔레비전 오른쪽 상단화면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반론보도문 순번 1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을 이행한 다음 날 18:40경과 같은 날 21:40경의 같은 지역뉴스 방송시간에, 텔레비전 오른쪽 상단화면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반론보도문 순번 2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을 이행한 다음 날 18:40경과 같은 날 21:40경의 같은 지역뉴스 방송시간에, 텔레비전 오른쪽 상단화면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반론보도문 순번 3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4. 만일 피신청인이 제1 내지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 제1 내지 3항 및 만일 피신청인이 제1 내지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소명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농업생산증진과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상업선전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3. 7. 22. 18:40경 및 같은 날 21:40경에 방송한 지역뉴스 프로그램에서 “농협이 구사대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약 1분 28초 동안 신청인 조합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정상화운영위원회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그 운영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의혹을 받

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 방송내용 순번 1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같은 달 23. 18:40경 및 같은 날 21:40경 방송한 같은 지역뉴스 프로그램에서 “서부농협 조합장 비리의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1분 30초 동안 진주 농민회 서부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인 조합의 조합장인 신청인 정○○이 H컴퓨터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부농협에 컴퓨터 등을 독점 공급해 왔고, 불법검직을 통하여 수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별지 방송내용 2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같은 달 24. 18:40경 및 같은 날 21:40경 방송한 같은 지역뉴스 프로그램에서 “서부농협노조 조합장 퇴진요구”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조합의 노동조합이 조합장 퇴진투쟁에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이 H컴퓨터회사 뿐 아니라 소금융통업체까지 운영해 왔으며 또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이 불법단체라면서 법원에 노조활동금지 가처분을 내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는 내용의 별지 방송내용 3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인격적인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반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청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문에서 인정하는 별지 반론보도문의 기재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원문을 왜곡해석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고 나아가 피신청인측이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들측의 반론도 충분히 방영하여 방송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를 살펴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원문을 왜곡해석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방송에서 피신청인측이 신청인 정○○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여 신청인들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방송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방송은 신청인 조합의 노조탄압을 위한 불법적인 정상화운영위원회의 운용, 신청인 정○○의 비리의혹 등에 그 보도의 중점

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방송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측의 반론을 보장했다고 들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도 이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은 이를 신청인들의 반론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신청인들의 단순한 변명 정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방송내용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반론보도의 방법과 내용 및 간접강제

나아가 반론보도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의 보도내용과 보도경위, 그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 정도, 이 사건 방송의 내용과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반론보도의 방법과 내용은 신청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단, 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주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아울러 피신청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4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남 근

판사 장 찬

판사 이 성 삼

반론보도문

1. 본 방송사는 2003. 7. 22. 18:40경과 같은 날 21:40경의 지역방송뉴스에서 “농협이 구사대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의 정상화운영위원회에 관하여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반론보도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사는 진주서부농협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수천만원을 들여 임시기구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서부농협은 위 임시기구는 서부농협정상화운영위원회로서, 위 위원회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노사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은 서부농협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임시간담회 참석자들이 농민조합원을 추천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사는 운영위원 가운데 상당수는 비조합원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주서부농협은 비조합원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2. 본 방송사는 2003. 7. 23. 18:40경과 21:40경의 지역방송뉴스에서 “서부농협조합장 비리의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반론보도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사는 진주농민회 서부지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장이 H컴퓨터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부농협에 컴퓨터 등을 독점 공급해 왔고, 서부농협조합장이 불법검직을 통하여 수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임직원의 경우 검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주서부농협은, H컴퓨터회사는 조합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의 6촌동생이 운영하고 있고, 서부농협은 H컴퓨터회사로부터 컴퓨터를 독점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서부농협 조합장이 불법 검직한 사실이 없고, 검직을 통하여 수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3. 본 방송사는 2003. 7. 24. 18:40경과 21:40경의 지역방송뉴스에서 “서부농협노조 조합장 퇴진요구”라는 제목으로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과 노조간의 갈등에 대하여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반론보도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사는 서부농협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장이 소금 유통업체까지 운영해왔고, 최근 법적기구인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며 법원에 노조활동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주서부농협은 그 소금 유통업체는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서부농협은, 서부농협노조원 중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에 가

입 및 활동할 수 없는 자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노동조합 및 일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부분은 일부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노동조합 자체로서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기각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끝.

방송내용

1. 2003. 7. 22.자 방송내용

자막 : 농협이 구사대 운영?

앵커 : 올 초부터 노, 사 갈등이 계속된 진주 서부농협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수 천만원을 들여 임시기구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자!

이○○ : 지난 2월 중순 진주 서부농협, 농협 버스를 타고 나타난 수십명의 노조원들의 조끼를 강제로 벗깁니다. 이들은 노조의 집단행동에 반발한 조합원들이었다고 당시 서부농협은 밝혔습니다.

[서부농협 조합장인 정○○과의 인터뷰 장면이 방송됨]

정○○ : 조합원들이 실체를 알면서 조합원이 분개해서 한 것이다.

이○○ : 하지만 이들은 서부농협에 고용됐던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서부농협은 지난 2월 119명으로 구성된 정상화운영위원회란 조직을 만듭니다. 운영위원 가운데 상당수는 비조합원이었습니다.

[서부농협 조합장인 정○○과의 인터뷰 장면이 방송됨]

정○○ : (위원들은) 우리 농협의 가족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 농협과 거래하는 준조합원이다.

이○○ : 이들은 많게는 2,300,000원, 적게는 70,000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119명이 지난 달까지 4개월 동안 받은 돈은 모두 50,19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노조원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정상화운영위원회 구성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부농협 감사인 윤○○와의 인터뷰 장면이 방송됨]

윤○○ : 우리 집행부는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50,190,000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다.

이○○ : 서부농협 정상화운영위원들의 집단 행동, 자발적인 것인지 일당의 대가였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2. 2003. 7. 23.자 방송내용

자막 : 서부농협 조합장 비리의혹 논란

앵커 : 진주 서부농협의 노, 사 갈등이 지루하게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장의 비리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자!

이○○ : 진주농민회 서부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농협 조합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이 H컴퓨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부농협에 컴퓨터 등을 독점 공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 임직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주농민회 서부지회가 제시한 자료입니다.

서부농협 문서의 조합장 서명과 H컴퓨터 회사의 문서 결재란의 서명이 동일합니다.

진주농민회 서부지회는 서부농협 조합장이 불법겸직을 통해 수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최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부농협 조합장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다만 자신의 아내가 H컴퓨터 회사의 채권자여서 남편의 입장에서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서부농협과 H컴퓨터 회사의 거래도 정상적이었으며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법기관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3. 2003. 7. 24.자 방송내용

자막 : 서부농협노조 조합장 퇴진 요구

진주 서부농협노조가 조합장 퇴진투쟁에 나섰습니다.

서부농협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이 H컴퓨터 업체 뿐 아니라 소금 유통업체까지 운영해 왔으며 목포의 소금업체가 조합장에게 보낸 대금청구서를 그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최근 법적인 기구인 노동조합이 불법단체라며 법원에 노조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서부농협노조는 오늘 서부농협 주차장에서 조합장 퇴진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끝. □